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19. . .
발 의 자	권재욱 의원 외 8명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권재욱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권재욱·김낙관·김재상·송용자
신문식·양진오·이지연·장미경
장세구 의원(9인)

1. 제안이유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산림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시장 및 임업관계자 등의 책무(안 제3조)

다. 재정지원 및 대상(안 제4조 ~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민법」 제32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산림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립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를 말한다.
5. “임업관련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임업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임업관계자 등의 책무) ①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업관계자와 임업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산림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임업관계자와 임업관련 단체는 임업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 등 구미시 임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임업관계자와 임업관련 단체의 소득증대, 경영 안정, 임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
2.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전국단위 회의·교육·연수사업
3. 임산물의 생산·저장·가공·판매·유통 관련 활성화 사업 및 직거래·소비·홍보사업
4. 임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 단위 또는 전국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그 밖에 임업기술 보급, 임산물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 단체
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 그 밖의 시장이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 단체를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산촌개발사업"이란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구미시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임업관계자와 임업관련 단체에 대한 각종 행사·회의·교육 참여 등 재정지원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구미시 임업관계자와 임업관련 단체 재정지원에 따른 세출예산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10,200
○임업관련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 • 임업분야 기술전문 강사료	500,000원×2회	1,000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회의·교육· 견학 등 참석여비 보상	200,000원×20명	4,000
○임업관련 단체 주관 시 단위 및 전국단위 행사 참여 지원 • 임산물 홍보, 전시부스 운영	500,000원/회×2회	1,000
• 임차료(버스)	600,000원×2대	1,200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여 여비 보상	150,000원×20명	3,000

4. 작성자

- 산림과 산림자원계 강도윤(054-480-5865)